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36
----------	-------

발의연월일 : 2026. 8. 31.

발 의 자 : 이광재 · 한준호 · 정태호
박지원 · 어기구 · 조승래
장종태 · 신정훈 · 김남희
임호선 · 최기상 · 백혜련
임문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 규칙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은 정책결정과 관련된 불법·부패 행위를 제외한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정권 교체 이후 정치적·보복성 감사로 활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아 온 정책감사에 대한 폐지 필요성을 반영하여 2025년 12월 개정된 부분임.

정부 정책의 결정에 대한 감사는 정치적·사회적 논란과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야기하고 행정부의 정책결정 재량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큰바, 현행법상 이미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무총리 또는 국방부장관의 국가기밀·군기밀 등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외에 정책 결정에 대한 사항 또한, 직무감찰 제외 대상으로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찰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감사원은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법률 제 호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當否). 다만, 정책결정과 관련된 불법행위 또는 부패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감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감찰 사항)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u><신 설></u> <u>1. 2.</u> (생략)	제24조(감찰 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1.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當否). 다만, 정책결정과 관련된 불법행위 또는 부패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감찰할 수 있다.</u> <u>2. 3.</u>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